

지방계약학회 관련자료

- ▶ 지방계약학회 주요 연혁
- ▶ 지방계약연구 총목차
- ▶ 학회 정관
- ▶ 지방계약연구 편집규정

지방계약학회 주요 연혁

○ 한국지방계약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회

- 일시 : 2008년 4월 18일(금)
-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디지털 미디어센터 4층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발기인
- 후원 : 행정안전부, 디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2008년도 이사회 개최

- 일시 : 2008년 5월 16일(금) 18:00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층 강의실

○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09년 2월 19일(목) 13:30 ~ 17:30
- 장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후원 : 행정안전부
- 대주제 : 지방계약과 조달행정의 발전방향

○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10년 7월 5일(월) 14:00 ~ 18:30
- 장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 후원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주제 : 예산절감 및 품질제고를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 『지방계약연구』 창간호 발간

- 2010년 7월 31일자
- 논문 4편, 관례회고 1편, 외국법제조사 1편, 기타 지방계약자료 2편 게재

○ 지방계약학회/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시 : 2010년 9월 10일 (금) 14:00 - 18: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231호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후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 대주제 : 지방재정 및 지방계약법제의 선진화

○ 추계지방계약발전세미나 및 계약 공무원 연찬회

- 일시: 2010년 11월 11일 (목) 14:00 - 18:00
- 장소: 경북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 주최: 한국지방계약학회
- 후원: 지방재정공제회, 대한건설협회
- 대주제: 지방계약제도 발전방안

○ 2010년도 동계 워크숍 및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10년 12월 16일(목) 16:00 ~ 20:00
- 장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회의실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 후원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주제 : 지방계약제도의 새로운 전개

○ 『지방계약연구』 제 2권 제1호 발간

- 2011년 2월 28일자
- 논문 6편, 외국법제조사 1편,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자료 게재

○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11년 5월 19일(목) 14:00 ~ 18:00
-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회관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 후원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주제 : 지방계약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2011년도 하계 워크숍 및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11년 8월 25일(목) 18:45 ~ 21:30
- 장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회의실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 후원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주제 : 지방계약의 현안 제문제

○ 『지방계약연구』 제 2권 제2호 발간

- 2011년 8월 16일자
- 논문 5편, 판례회고 1편, 외국법제조사 1편,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자료 게재

○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11년 11월 25일(금) 14:30 ~ 17:30
-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청사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대전광역시
- 후원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주제 : 지방계약제도의 현안문제

○ 『지방계약연구』 제 3권 제1호 발간

- 2012년 2월 29일자
- 논문 5편, 판례회고 1편, 외국법제조사 1편,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자료 게재

○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12년 5월 17일(목) 14:00 ~ 5월 18일(금) 12:00
- 장소 : 충남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논산시
- 후원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주제 :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 2012년도 하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12년 7월 12일(목) 14:00 ~ 18: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 후원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주제 : 지방계약의 전문성 강화방안의 모색

○ 학회 홈페이지 구축

- 주소 : <http://www.kalgc.or.kr>

○ 『지방계약연구』 제 3권 제2호 발간

- 2012년 8월 31일자
- 논문 35편, 판례회고 1편, 외국법제조사 1편,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자료 게재

○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12년 10월 18일(목) 14:00 ~ 18:30
- 장소 : 제주도 제주대학교 회의실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협회
- 후원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세연구원
- 대주제 : 지역상생 발전의 모색

○ 2012년도 동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12년 12월 21일(금) 14:00 ~ 18:00
-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실 2층 대강당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 후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주제 : 조달행정 분권의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13년 2월 22일(금) 13:30 ~ 18:30
-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층 세미나실
- 주최 : 한국지방계약학회
- 후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주제 : 계약제도와 공정사회

지방계약연구 총목차

<지방계약연구 창간호, 2010. 7.>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발전방안	김대인
공유재산 민간위탁 관리와 수수료체계의 개선방안	고경훈
지방계약법 제정배경 및 의의와 그동안 운영실태, 앞으로 발전방향	최두선
지방계약법의 개정내용과 의의	최두선
2009년도 지방계약 판례회고	정 원
독일 지방계약법의 기본구조	강기홍

<지방계약연구 제2호, 2011. 2.>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일본의 경험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유진식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방안	권경현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공제제도 발전방향	신유호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실무운용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론적 방안을 중심으로 -	김태완
공공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발전방안	김대식
지방자치단체계약상 수의계약의 한계와 발전방안	정 원

<지방계약연구 제3호, 2011. 8.>

지방분권과 계약조직의 전문화	김찬동
일본의 최적가치낙찰제도인 종합평가방식의 운영 사례와 시사점	곽채기
최적가치제도의 법적 발전방안 - 서론적 고찰 -	성승제
지방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 건설기술 용역의 지역 제한경쟁 입찰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황태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대식
2010년, 2011년 지방계약 판례 회고	정 원
EU와 독일 연방공공계약법의 체계	강기홍

<지방계약연구 제4호, 2012. 2.>

미국의 전자조달제도	육소영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 활용	황창선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경향	김성근
EU와 독일법상 공공건설 도급제도	
- 국가 및 지방의 하도급 공정화와 연계하여 -	강기홍
다수공급자계약의 법률관계	김대인
2011년 하반기 지방계약 판례 회고	정 원
리스본 조약상 공공건설계약에 관한 규정	강기홍

<지방계약연구 제5호, 2012. 8.>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행정관리방향	현승현·배수호
지방계약실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 및 연구의 제도화를 위하여 -	이준형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계약방식의 발전방안 - 효율성 달성을 위한 탄력적 계약방식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김대인
2012년 상반기 지방계약 관례 회고	정 원
EU법상 공공분야 계약지침	강기홍

한국지방계약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방계약학회(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활동)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계약제도의 기초연구
2. 학회지, 연구서적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학술대회 및 연구 발표회의 개최
4. 전자 상거래, 시설 공사 등 공공계약제도의 응용연구
5. 학회 활동에 부합하는 연구 용역의 수행
6. 계약관련 교육 훈련
7. 계약사무의 위임·위탁업무와 원가산정 및 계산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업무
8. 계약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관리 운영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특별회원, 준회원이 있다.

제6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정규대학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공공계약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공공계약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와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공공 기관의 계약 및 감사 업무 종사자

4. 입찰과 계약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원가산정용역기관 종사자
5. 공공계약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7조(특별회원 및 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는 특별회원으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며 학회지 및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미납의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1. 본 학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편집위원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감사 2인, 이사 50인 이내(상임이사 포함)를 둔다.
2. 이사는 총무, 연구, 편집, 교육, 섭외,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와 무임소이사로 한다.

제10조(명예회장 및 고문)

1. 본 학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퇴임한 직전회장으로 하며,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편집위원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장과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보 발간업무를 담당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장 기 구

제13조(기구의 종류) 학회의 기구로서 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14조(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로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정관의 변경, ② 활동보고의 승인과 활동방침의 결정, ③ 회계보고의 승인과 예산의 결정, ④ 회원의 자격심사, ⑤ 기타 중요사항
3. 임시총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중요사항이 있거나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위임 포함)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부설연구원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기타 학회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회는 과반수출석(위임 포함)과 출석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1. 본 학회는 학술지 편집과 발행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부설연구원) 본회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계약학회 부설 한국공계약연구원”을 둔다.

1. 부설연구원에는 연구원장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부설연구원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내규에 의한다.

제18조(사무국)

1. 본 학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직원을 통솔한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수입 및 지출)

1. 본 학회의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 ①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② 연구용역 및 사업수익금, ③ 찬조금, ④ 기타 수입금
2. 본 학회의 지출은 다음으로 한다.
 - ① 사업비, ② 일상운영비, ③ 인건비, ④ 기타 경비

제20조(회비부과 및 납입)

회비의 결정, 부과, 납입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① 본학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회의 일반관행에 따른다.

지방계약연구 편집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지방계약연구 편집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한국지방계약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지방계약연구」의 편집, 심사 등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방향)

- ① 지방계약연구는 지방계약(행정학, 경영회계학, 법학 등)과 관련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 ② 지방계약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지방계약 각 분야의 주제를 다룬 이론연구, 실증연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세칙) 지방계약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연구 편집위원회(이하에서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법인의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③ 편집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기)

-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지방계약연구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의뢰와 원고의 게재여부의 판정
2. 원고의 게재순서의 조정

3. 지방계약연구의 편집
4. 기타 지방계약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7조(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원고게재신청

제8조(원고의 종류)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별하여 원고의 표지에 표기한다.

제9조(논문게재신청자격 및 게재신청논문)

- ① 지방계약연구에 게재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한국지방계약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게재신청한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이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 ③ 외국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의 제도나 관련 과제를 분석한 논문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및 조세연구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게재신청할 수 있다.
- ④ 논문이 외국연구(미발표논문 포함)의 단순한 반복수행에 해당되어 새로운 공헌도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외 선행연구(미발표논문 포함)가 있으나 그러한 선행연구의 존재여부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논문게재신청과 투고료납부) 지방계약연구의 게재신청서양식 및 투고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논문작성요령) 지방계약연구에 게재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① 논문작성의 기본원칙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논문언어] 논문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학술용어는 가능하면 한글로 쓰고 번역된 용어는 ()안에 원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편집도구] 논문은 한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편집한다.
 3. [논문편집용지] 논문의 편집용지는 A4용지 크기로 한다.
 4. [논문분량] 논문분량은 논문본문, 도표, 참고문헌, 기타를 포함하여 총 A4용지 30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② 논문의 논문표지, 논문제목, 저자표시, 국문요약문, 주제어표시, 본문, 게재중복신청 확인표시, 참고문헌, 영문요약문, 부록(설문지 등)의 순서로 구성하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다만,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 [논문표지] 지방계약연구에 게재신청하는 논문에는 별지의 논문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논문표지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명, 근무처, 직위, E-mail, 연락전화번호, 연구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원고매수를 표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제1저자)를 구분하고 별도로 연락저자명(교신저자명)을 표기한다.
 2. [논문제목] 논문의 전개는 각 장을 로마자의 I, II, III ... 로 표기하고 그 다음의 세분류는 1, 2, 3. ... 가, 나, 다, ..., (1), (2), (3),..., (가), (나), (다), ... 방식으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은 굴림체로 하되, 각 제목마다 글자크기를 다르게 한다.
 3. [저자표시] 저자는 논문표지에만 표시해야 한다. 논문표지 외에 국문요약문, 영문요약문 및 본문에는 익명의 심사를 위하여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저자명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며, 저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면 안된다.
 4. [논문요약문] 논문표지의 다음 쪽에서는 논문제목과 국문요약문을 표기하며, 마지막 쪽에는 영문요약문을 표기한다. 국문요약문은 1000자 이내로 하되 논문표지 다음 쪽의 논문제목과 논문본문 사이에 놓이도록 하되, <요약>이라고 짧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영문요약문은 1페이지 이내로 논문말미에 놓이도록 하되, <Abstract>라고 짧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논문의 요약문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논문요약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5. [주제어] 논문의 국문요약문 및 영문요약문의 바로 밑 난외에 3내지 5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주제어는 굴림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6. [논문본문] 논문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하며, 문단 첫 줄의 들여쓰기는 10pt로 한다.
 7. [표, 그림]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고딕체로 표기하되, 제목앞에는 각각 <표 1> 및 <그림 1>를 표기한다. 표와 그림에는 필요하면, 해설과 출처 등을 표시한다. 표와 그림의 제목은 굴림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하고, 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8. [주석] 주석은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보조설명 등에 국한하며, 문헌인용은 본문에 기재하고 주석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즉 주석은 본문에 삽입할 경우 본문 내용이 난해해지거나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주석

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9. [약자, 영문표기]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예)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 외부감사대상기업(외감기업)

10. [문헌인용] 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 1)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저서: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2.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출판연도 (또는 제○○권 ○호), 면수.
3.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선생 ○○기념논문집),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4. 판결인용: 다음과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판결: 대법원 ○○○○. ○○. ○○ 선고 ○○누○○ 판결

결정: 대법원 ○○○○. ○○. ○○ 선고 ○○두○○ 결정

헌재: ○○○○. ○○. ○○ 선고 ○○헌가○○ 결정

5. 외국문헌: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6. 외국판결: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

- 2) 재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저서인용: 저자명, 앞의 책(또는 前掲書), 면수.

2. 논문인용: 저자명, 앞의 논문(또는 前掲論文). 면수.

11. [게재중복신청확인]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2.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시해야 하며, 인용되지 않고 단순히 참고한 것은 표시해서는 안된다. 서적과 논문의 구별없이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ABC 순으로 각각 배열한다. 서적의 이름은 동양문헌의 경우 『 』로,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은 동양문헌은 “ ”로 표기한다. 관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을 따른다. 같은 저자의 문헌을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 연도표시는 2002a, 2002b 등으로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인용방식에 따르거나 다음의 예에 따라 표기한다. 참고문헌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예) 김지방. 2000. “지방계약에 관한 연구”. 지방계약연구 제1권 제1호: 5-24.

김지방·이지방. 2002a. “미국지방계약에 관한 연구”. 지방계약연구 제3권 제2호: 15-34.

_____. 2002b. “중국지방계약에 관한 연구”. 지방계약연구 제3권 제3호: 25-45.

김지방 (2003), 『지방계약』 제2판, 세학사.

행정안전부 (2005), “지방계약”. [http://www.mopas.go.kr/\(생략\)/...htm](http://www.mopas.go.kr/(생략)/...htm).

대법원. 1997.11.8. 선고. 97다118 판결.

Eger, Charles L., Contractor Team Arrangement under the Antitrust Laws, 17 Pub. Cont. L.J. 595 (1988),

Savas, Emanuel S.,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Chatham House Publisher, Inc. (1987).

제12조(논문파일발송과 게재료납부)

- ① 지방계약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게재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논문반환불가) 지방계약연구에 게재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14조(심사대상논문)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 ③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와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심사위원)

- ① 심사위원은 다음에 계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한국지방계약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2.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게재에 부적합”의 건수의 비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판단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2. 내용의 창의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문내용의 효과적 의사전달
5.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

제18조(심사보고)

-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보고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수정보완 없이 게재,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 게재에 부적합),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에 부적합한 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보고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정보완없이 게재 : 논문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 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 : 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론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게재에 부적합 :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지방계약에의 기여도 미흡 등으로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⑤ 심사위원이 초심 및 재심의 심사의뢰를 받은 후 각각 3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촉구서를 발송하고, 심사의뢰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9조(심사결과통보)

- ① 편집위원장은 1차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부적합 혹은 저저포기)가 결정된 경우 게재신청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되므로 저자는 투고료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 논문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심사보고서에 따른 수정보완은 심사자가 “수정, 보완없이 게재함” 또는 “게재에 부적합함”이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한다.

제21조(최종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

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표> 지방계약연구 제출논문 심사결과 처리기준

심사결과			처 리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게재불가	게재불가	기타의견	게재불가 확정
게재불가	대폭수정	대폭수정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불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게재불가	대폭수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게재불가	소폭수정	소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불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대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기타의견	게재 확정

* 여기서 게재불가는 “게재에 부적합함” 의견을, 대폭수정은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 고려함” 의견을, 소폭수정은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 고려함” 의견을, 게재가능은 “수정·보완없이 게재함” 의견을 말한다.

제5장 논문편집

제22조(논문게재대상)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지방계약연구에 게재한다.

제23조(논문게재순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계약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논문발행권호 및 발행일의 명시) 지방계약연구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제25조(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의 명시) 지방계약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후원기관의 명시) 지방계약연구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

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제27조(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지방계약연구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

제6장 학회지배부

제28조(학회지 배부)

- ① 지방계약연구를 발행할 때마다 정회원에게 1부,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에게 2부, 후원기관에게 2부, 논문게재자에게 3부를 배부한다. 다만, 회비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술지의 배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기관 혹은 개인 등에 배부할 수 있다.

제29조(학회지 판매)

- ①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학회지를 판매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외부기관에 학회지 논문을 유료 혹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

제30조(표절논문과 중복게재논문에 대한 제재) 지방계약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논문목록에서도 삭제
3. 해당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한국지방계약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

제31조(논문내용의 책임) 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조(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의 양도)

- ①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지방계약학회가 갖는다.
-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을 한국지방계약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게재신청을 지방계약연구에 할 수 없다.

제33조(비밀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관리) 지방계약연구의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편집위원장이 관리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5조(관리대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계약연구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을 기록한 지방계약연구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발행시기) 지방계약연구는 매년 2회(7월 31일, 2월 28일) 발행한다.

제37조(논문의 홈페이지공지) 지방계약연구의 논문을 학회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38조(논문게재예정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방계약연구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성승제 (법제연구원)

편집위원 김상헌(서울대), 임태호(연세대)
이준형(한양대), 지현미(계명대)
최병호(부산대), 최진혁(충남대)

『지방계약연구』 [통권 제6호]

발행인 이원희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지방계약학회

발행일 2013년 2월 28일

편집·제작 도서출판 조명문화사
전화 02) 498-3017(대)
Fax 02) 498-3018
E-mail : jo0406@empas.com

정가 30,000원

* 이 책의 무단복제·복사·전제를 금함.
* 발행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검인을 생략함.

ISSN 2093-7245